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가단22191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덕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3. D

4. E

변 론 종 결 2021. 2. 4.

판 결 선 고 2021. 4. 15.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676,251원 및 그 중 6,954,135원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에 대한 지급명령의 확정

1) 원고(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는 1996. 11.경 피고 주식회사 B와의 사이에 동 피고가 소외 G 주식회사(이하 ‘피보험자’라고 한다)로부터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는데 그 할부금지급보증 담보를 위한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1997. 4. 29. 위 보증보험약정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15,186,957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0가소003479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0. 12. 12. 승소판결을 받았다.

3)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완성을 막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13932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10. 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869,050원 및 그 중 15,186,957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0. 11. 19. 확정되었다(이하 위 구상금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하고,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들의 변제 및 이 사건 소 제기

피고들은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 원금 8,232,822원을 변제하여, 2019. 7. 30. 기준 이 사건 채무는 나머지 원금 6,954,135원 및 그때까지 지연손해금 58,722,116원의 합계 65,676,251원에 이르렀다. 피고들이 위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채무의 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다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676,251원 및 그 중 6,954,135원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의 채무감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2018. 10. 29. 원고의 채무감면 요청에 따라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채무감면 승인을 한 사실, 그 후 원고가 2019. 7.경 이 사건 채무감면 승인을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한 이 사건 채무감면 승인을 취소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취소가 정당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2019. 7.경 이 사건 채무감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었는지 여부 및 그 취소가 무효인지 여부이고, 전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후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채무감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10. 29.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 등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연대보증채무 3건의 감면을 요청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채무감면요청서(갑 제7호증의 1, 을 다제3호증)에는 ‘채무감면 승인 후라도 승인일 현재 채무감면 대상 채무자가 별도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밝혀지거나 요청인의 고지 내용이 부실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귀사 임의로 승인내용을 취소하고 채권 전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는 ‘위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고 서명 ·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기재에 따라 유의사항 확인란에 기명 및 서명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감면요청서와 함께 ‘피고 소유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유재산명세서(갑 제7호증의 2)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29. 위 채무감면요청서 및 소유재산명세서에 기초하여 피고가 2018. 11.부터 2020. 10.까지 25회에 걸쳐 29,800,000원을 분할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채무를 포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채무감면 승인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의 남편 H과 피고의 아들 I은 2018. 3.경 부산 기장군 J 토지 등 3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각 1/2씩 취득하였는데, I은 2018. 8. 31. 배우자 및 자녀 없이 사망하여 피고와 H이 그 재산상속인이 되었고, 피고는 2019. 2. 19.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 I이 소유하던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8.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지분을 상속하였음을 확인하고는 2019. 7. 25.경 ‘원고가 이 사건 채무감면 승인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무감면 승인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30.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등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K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갑 제15호증, 을 다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9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채무감면 승인 당시 원고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피고가 채무감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채무감면 승인일인 2018. 10. 29.경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아들 망 I이 이 사건 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8. 8. 31. 사망하여 피고와 H이 그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여기에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상속인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다만 사후에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분할협의를 하거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점(민법 제187, 997, 1005, 1015, 1042조 참조)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망 I이 사망한 2018. 8. 31.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각 지분 중 1/2에 관한 권리를 승계취득하여 2018. 10. 29. 이 사건 채무감면 승인 당시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즉 피고는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았어도 이미 위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다만 사후에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을 보유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위 소유권 취득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킬 수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채무감면 승인 당시 위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채무감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채무감면 승인은 원고의 2019. 7. 30.경의 채무감면 승인 취소 통보에 따라 취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및 채무감면 승인 당시 담당 직원인 L에게 망 I이 사망한 사실을 알렸고, L으로부터 '채무감면 승인 이후에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채무감면 승인의 효력과는 상관이 없다'는 설명을 들은 후에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및 채무감면 승인 당시 가정주부로서 경험이 전혀 없었고, 아들의 사망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L의 설명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므로, 이 사건 채무감면 승인 취소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바(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 또는 이에 기한 원고의 채무감면 승인 취소를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불공정한 거래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을 다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 '채무감면 승인 이후에 피고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채무감면

승인의 효력과는 상관이 없다'는 잘못된 설명을 하여 이 사건 합의 및 채무감면 승인 취소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는 법률행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의 직원이 위법하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어도 불공정하지 않은 내용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잘못된 설명을 하였다고 하여 그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위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채무감면요청서에 기재된 '채무감면 승인 후라도 승인일 현재 채무감면 대상 채무자가 별도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밝혀질 경우 귀사 임의로 승인내용을 취소하고 채권 전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유의사항을 '상속으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된다면, 이와 같은 내용은 채무감면 신청 및 승인 여부나 조건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약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상속으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무감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유의사항 부분은 무효이며, 위 유의사항을 상속 등을 포함한 모든 경우에 채무감면 승인의 효력이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피고가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 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지분 중 1/2은 이 사건 채무감면 승인 이후에 상속으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상속 개시 당시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사 원고에게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설명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채무감면 승인 당시 이 사건 각 지분 중 위 1/2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채무감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설명의무위반 여부가 그 취소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위 유의사항의 '채무감면 승인일 현재 채무감면 대상 채무자가 별도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밝혀지는 경우'의 범위에 민법 제187, 997,

1005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감면 승인일에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상속포기 등도 가능하였던 경우’가 포함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유의사항을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신의칙 위반 주장

피고는 오빠인 피고 C을 위하여 호의로 연대보증을 하였다가 1997년경 피고가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경매로 상실하였고, 그로 인해 이사를 간 곳에서 1998년경 아들 중 한 명을 교통사고로 잃었으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주부임에도 1억 원 상당의 원금과 이에 대한 20년 이상의 지연이자 채무를 부담하면서 신용불량자로 생활하였고, 망 I의 뇌종양 투병생활로 인하여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하여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고, 신용불량 및 고령의 나이로 인하여 취업도 어려워 별다른 수입이 없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상황,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입법취지, 원고의 설립 목적, 원고의 재산 규모에 비하여 이 사건 채무의 액수는 매우 작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연대보증인에 불과한 피고에게 연대보증금 원금 및 원금의 4배에 이르는 지연이자 전부를 지급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지극히 가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금에 대한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위 보증보험약정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회기